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참고자료		
보도	2021. 12. 8.(수) 조간	배포	2021. 12. 7.(화)
담당부서	연금감독실	권성훈 팀장(3145-5190), 이상탁 수석(3145-5186)	

제목 : [금융꿀팁 200선] ⑫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 이에 124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가입전 확인해 보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림

- ◆ (IRP* 개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①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 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시 불이익 부과
- ②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1社 1계좌)하며, 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 ③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됨*
*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온라인 계좌 개설시 IRP 수수료를 면제
- ④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나, 금융권역 · 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음

※ '21.9월말 IRP 적립금은 총 42.9조원으로, '20년말(34.4조원) 대비 8.5% 증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 ⑪

제 목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사례	<p>[1] (IRP 핵심설명서 확인) A씨는 작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IRP에 가입했다가,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한 후, IRP 가입시 핵심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음</p> <p>☞ IRP 가입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1page)에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p> <p>[2] (IRP 계좌 구분 관리) 이전 직장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B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음. 나중에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함</p> <p>☞ IRP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p> <p>*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부과</p> <p>[3] (수수료 비교) 근로자 C씨는 재직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사후 퇴직급여를 동 계좌로 이전받았으나, 계좌관리 명목으로 떼어기는 수수료가 많아 고민중임</p> <p>☞ IRP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全기간에 걸쳐 발생(연금개시 후에도 동일)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함. 만약,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p> <p>[4] (운용 상품 비교) D씨는 최근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에 투자하려 했으나,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투자에 곤란을 겪고 있음</p> <p>☞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p> <p>[5] (금리 비교) 퇴직을 앞둔 E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찾고 있음</p> <p>☞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만기별·상품제공기관별 금리를 비교</p>

꿀 팀

① [IRP 핵심설명서 확인] IRP 가입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1page)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IRP 가입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후 가입해야 함

* 금감원은 금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IRP 가입전 숙지해야 할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계약체결시 교부하도록 한 바 있음

IRP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① 수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안내-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서비스별(자산관리, 운용관리), 부담금 성격별(자기부담금,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안내
② 중도해지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과세
③ 연금수령조건 및 수령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조건* 및 연금수령시 소득세 법상 연간 한도(1,200만원)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안내* 연금수령 조건 : ①만 55세이상, ②가입후 5년경과(퇴직급여 등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
④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금융회사의 IRP · 연금저축을 합하여 연간 1,800 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계좌당 적정한도를 설정
⑤ 적립금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유의

☞ <붙임 1> 「개인형 IRP 핵심설명서(표준안)」 참고

② [계좌 구분 관리]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 보다는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여, (전액)중도 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관리할 필요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 가능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소득세를 부과

다만,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함

③ [수수료 비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함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음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함

[예시] IRP 계좌의 수수료 비교

수수료율	구 분	A사		B사	
		창구	온라인	창구	온라인
수수료율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	0.45%	0.35%	0.30%	면제
	자기부담금(근로자부담금)	0.30%	0.25%	면제	면제
10년간 발생한 수수료 금액 ※2억원(퇴직급여 1.5억, 자기부담금 0.5억) 가정		825만원	575만원	450만원	없음

※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 금융회사 :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 ['21.11월말 기준]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 금감원은 '19.11월부터 자금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온라인)방문 · 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음

다만, 계좌이체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

☞ <붙임 2>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참고

④ [운용상품 비교]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

근로자는 재직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함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의 권역별 특성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도 상이하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함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음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

** 은행·보험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

⑤ [금리 비교]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함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음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보장상품 퇴직연금상품 조회'

번호	상품구분	상품명*	상품제공기관	만기	약정금리	가입자구분	퇴직연금사업자
1	은행 예적금	(IRP)우리은행/정기예금 /2년	우리은행	24	1.83	IRP	<button>상세보기</button>
2	은행 예적금	(IRP)대구은행/정기예금 /2년	대구은행	24	1.55	IRP	<button>상세보기</button>
3	은행 예적금	(IRP)부산은행/정기예금 /2년	부산은행	24	1.85	IRP	<button>상세보기</button>

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과

- ◇ 개인형IRP 계좌에는, 대상기간중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구 분	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운용관리수수료율 (단일률)	자산관리수수료율 (체차식)	운용관리수수료율 (단일률)	자산관리수수료율 (체차식)
고객	1억원이하 1억원초과	0.2% 0.15%		
납입액				
퇴직금	2억원이하	0.1%		

*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퇴직후 퇴직금(퇴직급여)을 납입할 수도 있음
** 기타 수수료 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자산관리약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함
*** 수수료 계산 예시(고객 적립금 3억원 가정) : (단일률) 3억원×0.15% (체차식) 1억원×0.2%+2억원×0.15%

※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가능함

- ◇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보험)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또는 자산관리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세제

- ◇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연금수령
조건

- ◇ ① 만 55세 이상으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계좌는 만 55세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

연간
납입한도
설정

- ◇ 소득세법상(시행령 40조의2) 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만원*까지 설정(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700만원인 반면,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임(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운용기간중 배당·이자소득세<15.4%> 비과세)

적립금
운용

- ◇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MMF, 금리연동형 보험)으로 운용됩니다.
- ◇ 운용상품 교체·해지·계약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 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마찬가지로, 일부 펀드상품(특히, 만기가 정해진 펀드)은 편입한 후 단기간내(예: 2년)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① (가입자) 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체를 신청

- 신규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가입자가 확인·서명
- 이때, 신규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주민계좌번호 등) 오류여부를 확인

※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既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② (신규 금융회사) 기존 가입회사에 계좌이체를 요청

③ (기존 금융회사) 가입자 이체의사를 재확인

- 가입자가 선택한 확인방법(방문, 전화)에 따라, 녹취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체의사를 재확인

※ 익일까지 통화실패, 미방문,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체신청은 취소

④ (기존 금융회사) 이체의사 확인결과(통화불가, 미방문, 취소신청 등) 및 계좌상태(질권설정 등)를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

⑤ (신규 금융회사)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

- 연금수령중인 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

⑥ (기존 금융회사) 이체명세 및 연도별 납입내역을 신규 금융회사에 송부한 후 적립금을 송금(기존 계좌는 해지)

⑦ (신규 금융회사) 송금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 문자·앱·전화 등을 통해 실제 송금받은 날 + 1영업일까지 통보

